

2026년 제1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 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개요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진촬영 (의회홍보팀)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사진DB·기록 관리 ○ 의정홍보 및 보도자료 사진 촬영 ○ 의정활동 홍보 취재 지원 등 홍보 관련 업무 추진 ○ 홈페이지 사진 업로드 및 관리 ○ 그 밖에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속기 (의사팀)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등록 및 관리 ○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보조 ○ 그 밖에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자격요건

- 1)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 연령 : 18세 이상
- 3)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4)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

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
 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 분야(직급)	자격요건
사진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분야 지원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사진촬영 경력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단,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2종보통이상)를 소지하고 운전가능한 자 □ 사진기능사,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을 소지한 자 ※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자
속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관 등에서 속기 관련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단,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 1)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일반임기제), 10년(시간선택제임기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함.
- 2)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근로시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3)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 후 인정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 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 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5)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대체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함
 - ※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4 보수 및 복무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주35시간 기준
라급/8급(상당)	62,096천원	44,296천원	38,759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함(단,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당)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 시간선택제의 경우 평일 09:00~17: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3.6.(금) ~3.18.(수)	2026.3.16.(월) ~3.18.(수)	2026.3.25.(월) 예 정 (홈페이지 게시)	2026.4.1.(수) 예 정 (홈페이지 게시)	2025.4.8.(수) 예 정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제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시험(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항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함.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 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대상)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상, 중, 하)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의원면직(계약해지),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3. 18.(수) 18:00까지 [3일간]
- 접수장소 :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1층)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의회 (우: 11954)
 - 찾아오는길 : (대중교통) 구리시청, 구리아트홀 정류장
(자가용) 구리시청 내 주차장 ※ 최초 1시간 무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퀵서비스/택배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1:30~13:00 제외)
 -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날인

※ (다급) 구리시 수입인지 7,000원, (라급) 구리시 수입인지 5,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 증명서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에 반드시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접수 시 사전연락 필수)
- ▷ 주소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인사담당자
 - ▷ 우편접수자는 휴대폰 SMS로 접수현황을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당일 현장에서 배부(의회운영팀 인사담당자 ☎031-550-2517)
 -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현금불가)

○ 제출서류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다급) 구리시 수입인지 7,000원, (라급) 구리시 수입인지 5,000원 - (방문접수)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날인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16:30) 유의, 정부 수입인지 등 불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 반드시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기재하여도 미인정함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 -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2매 내외 작성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2매 내외 작성	제5호 서식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해당자만 작성, 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제6호 서식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해당 시) 사본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인사담당자 자필확인 등 별도의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 반드시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 서명(인)이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경력인정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유의	제7호 서식

연번	서류항목	비고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내용 확인 必) 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나.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
10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11	그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해당 시)	-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제8호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9호 서식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제10호 서식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cc.or.kr>) 및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에 공고합니다.(재공고시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는 응시번호 그대로 반영)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문의 :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인사담당자(031-550-2517)